

#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적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, 기존 센터 운영이 구마다 상이하며, 인력, 예산 차이로 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특히, 센터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여 서비스 품질 균형을 확보하고,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

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에,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 관련,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, 외국인주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  
- 이에 본 조례안 제18조의 경우,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및 보수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  
- 또한, 안 제22조의 경우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에 있어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